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이 자료를 통하여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남부지방법검찰청

전문공보관 김희경

보도자료

2023. 5. 17.(수)

전화 02-3219-4420 / 팩스 02-3219-2397

제 목

살인죄로 구속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로 강도살인의 실체를 밝혀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·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(제11조 제2항 제1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 금지정보

-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(부장 권현유)는, 피해자로부터 2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'살인' 사건에 대하여,
 - ①피고인의 사무실 등 4곳 압수수색, ②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, ③피고인이 사용한 23개 계좌의 56개월 동안 거래내역 분석, ④2,000개 이상의 통화녹음 파일, 5년 동안 카카오톡 메시지를 분석하는 등 심층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하였음
 - 검찰 보완수사 결과,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28억 5,000만 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던 중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,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하고 특별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점을 노려,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한 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을 규명하였음(구속기간 만기로 인해 우선 살인죄로 기소하고, 계속 보완수사하여 1심 재판계속 중 '강도살인죄'로 공소장 변경)
 - 또한, 피해자의 동생에게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 7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어 사기죄로 추가 기소하였음
 - 결국, '23. 5. 10.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 및 사기죄에 대해 전부 유죄가 인정되고 무기징역과 보호관찰명령이 선고되었으며, 검찰은 '23. 5. 15. 추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하였음
 - 항소심 공소수행을 철저히 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음
- ※ 피해자 유족의 거주지 관할 검찰청과 연계하여 생계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조치

1

피고인 및 피해자

- 피고인 A○○(남, 39세, 대부업자)
- 피해자 B○○(남, 37세, 피고인의 지인, 철거업), C○○(남, 30세, B○○의 동생)

2

공소사실 요지

- '22. 9. 29. 12:31경 피해자 B○○(남, 38세)에 대한 채무 약 28억 5,000만 원을 면탈할 목적으로,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한 다음, 계획적으로 살해함 [강도살인]
- '21. 4. 16. ~ '22. 9. 27. 3회에 걸쳐 피해자 C○○(B○○의 친동생)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700만 원을 편취함 [사기]

3

수사 및 공판 경과

- '22. 9. 29. 피고인, 범행 2시간 후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자수
- '22. 10. 7. 서울영등포경찰서, 피고인 구속 송치(죄명 : 살인)
- '22. 10. 17. 2개 검사실로 수사팀 편성, 피고인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4곳 압수수색, 피고인의 사무실 빌딩 옥상에 대한 현장검증

- ▶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 후 사무실 빌딩의 옥상에 올라가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, 빌딩 내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처남을 시켜 서류를 급히 빼돌리는 정황을 포착하여, 범행 동기에 의구심을 품고 전면 재검토에 착수함
- ▶ 빌딩 옥상을 확인한 바, 평소 사람들이 붐비고 담장도 높아 자살을 시도하기에는 부적합한 곳으로 확인함

- '22. 10. 11. ~ 25. 피해자의 유족, 참고인, 피고인 등 조사,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2대 포렌식 실시 및 분석

● '22. 10. 26. 살인죄로 구속 기소, C○○에 대한 사기죄 추가 인지

- ▶ 분석할 자료가 방대하여 보완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던 중 구속만기가 임박하여 우선 살인죄로 구속 기소함
- ▶ 한편, 피고인이 B의 동생인 C를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규명

● '22. 10. 26. ~ '23. 2. 1. 보완수사 계속 진행

- ▶ 피고인이 대부업에 사용한 23개 계좌의 거래내역 및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약 2,000개 분량의 전화녹음 파일, 5년 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확인·분석하고, 다른 금전거래자 5명을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실시함

● '22. 12. 21. ~ 4. 19. 제1~4회 공판기일 진행

- '23. 2. 2. 공소장변경(살인 → '강도살인'), C○○에 대한 사기 추가 기소

- ▶ 피고인은 자신이 오히려 B로부터 27억 원을 받아야 할 입장이라며 채무면탈 목적을 부인함

● '23. 5. 10. 1심 판결 선고

- ▶ 전부 유죄로 인정되었고, 피고인에게 무기징역, 보호관찰이 선고됨
- ▶ 피고인의 채무면탈 목적 부인에도 불구하고,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차용내역 메모 정보, 피고인의 채무에 관한 통화녹음, 계좌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B○○에게 약 28억 5,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그 채무를 면탈하고자 범행한 사실 인정됨
- ▶ 다만,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

4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

- 이 사건은 피고인이 B○○와의 금전 갈등을 동기로 하여 살해한 사건으로 '살인죄'만 적용되어 구속 송치되었으나,

- 피고인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여 피고인 영업 관련자료를 확보하고,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 23개 및 피고인 휴대전화 2대에 대한 포렌식에서 발견된 2,000개 이상의 통화녹음 파일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철저한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,
- 피고인이 B○○에 대한 28억 5,000만 원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그를 지하 주차장으로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살해하였고,
- 범행 직후 주요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인멸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으며, B○○ 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자신도 B○○로부터 27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자금이 막혔다며 책임을 돌리는 등 범행과 이후 증거인멸이 철저히 계획된 것임을 밝혔음
- 이후, 강도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1심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게 함으로써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도모하였음
 - ※ 다만, 1심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되어 항소제기
- 검찰은 피해자 유족의 거주지 관할 검찰청과 연계하여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절차를 진행하였고, 항소심에서도 철저히 공소 수행 하여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음 